



즉시 배포용: 2015년 11월 17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되풀이되는 유료 통행료 위반자를 엄중 단속하는 법규를 발표하다

DMV, 뉴욕주에 연간 1,650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반복적인 유료 통행료 위반자의 등록을 중단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유료 통행료와 수수료 지급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단속하는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제안서에 따라 뉴욕주 자동차부는 다섯 차례의 유료 통행료, 수수료, 그리고 18개월 동안 기타 각기 다른 날에 위반하여 발생된 벌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료 징수 기관의 반복된 통지를 묵살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록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통행료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벌과금 납부를 기각 받아야 등록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또는 등록 상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회피자들은 규칙대로 사는 성실한 뉴욕주민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며 뉴욕주의 교통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의 새로운 조치는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내야 할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이런 상습 위반자들이 도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고속도로 공사 및 뉴욕 & 뉴저지 항만청, 뉴욕주 교량 공사 및 Triborough Bridge & Tunnel 공사를 포함한 뉴욕의 통행료 징수기관들은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기관들은 위반자들이 18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 위반 건수가 다섯 건이 넘는 경우가 거의 35,000건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50만 달러의 세입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법을 준수하고 통행료를 납부하는 운전자들에게 인프라 유지 및 대중교통 지원 등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등록 중단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 등록자들은 DMV 행정법 판사가 주관하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통지문에 명시된 대로 중단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행료 징수기관이 DMV에게

운전자가 미납 통행료, 수수료 및 기타 벌과금을 완납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 등록 중단 조치를 효력을 유지합니다.

통행료 징수기관은 위반자에게 각 통행료 위반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발생 금액, 납부 방법, 위반 관련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위반자가 통행료, 수수료 또는 기타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러한 통행료, 수수료 또는 벌과금을 각종 고지서에 대해서 기각 또는 이양한다면 통행료 징수기관이 위반자를 DMV에 회부할 것입니다.

“뉴욕주 차량 및 교통법은 DMV에게 습관적 및 지속적인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차량 등록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다섯 건의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DMV의 Terri Egan 차관이 말했습니다. “DMV는 이와 같은 상습 위반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상습 위반자들이 법을 존경하고 자신들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뉴욕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통행료 법규는 2015년 11월 18일에 State Register에 발표됩니다. 이때 45일의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2016년 1월 4일에 끝납니다. 수렴된 모든 의견은 잘 검토한 후 법규로 정식 채택하고 이행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